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45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 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법령 체계상 일부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안 제27조)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다. 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재외동포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질병관리청·기상청·우주항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 등 성능인증 적합 여부 평가

3.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징수
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 처분을 위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p> <p>가.·나. (생략)</p> <p>다. <u>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u> 및 <u>해양경찰청</u>의 장</p> <p>라. (생략)</p> <p>2. ~ 6. (생략)</p> <p>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생략)</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 ----- ----- -----.</p> <p>1.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재외동포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질병관리청·기상청·우주항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u> -----</p> <p>라. (현행과 같음)</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신 설></p>	<p>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 인증 신청의 접수</p>
<p><신 설></p>	<p>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합 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 등 성 능인증 적합 여부 평가</p>
<p><신 설></p>	<p>3.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공장 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 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징수</p>
<p><신 설></p>	<p>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성능 인증 취소 처분을 위한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p>
<p><신 설></p>	<p>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능 인증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 우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 에 대한 성능검사</p>
<p>1. ~ 8. (생 략)</p>	<p>6. ~ 13. (현행 제1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545